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3th October 2014

- ▶ WHERE IS GRACE CHANG?:
WITH THE PEOPLE*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관세청의 과세자료 확보방안과 기업의
법규준수 제고
..... 3
- ▶ FTA NEWS: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이슈
..... 5
- ▶ VOICES FROM THE FIELDS:
지역파견 FTA 전문 관세사가 느끼는
현장의 소리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㉓
..... 11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With the people***



장승희
 대표 관세사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빠진 백성이 없어야 한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 자 하는 바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가여운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글자라는 한글은 1443년 창제되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언문 28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訓民正音(훈민정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친제(親製)되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生生之樂(생생지락)**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편히 살면서 생업에 재미를 붙이게 하라’고 지방에 내려가는 수령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도 꿈꾸는 사회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줄인다는 한 기업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쇼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은 삼분의 일로 줄었고, 2014년 2/4분기 대한민국 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감소(-0.4%) 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즐겁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의, 그룹의, 한 회사의 또는 국가의 리더는 자신의 임무중 어떤 일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 일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3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건국 이념인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지속을 위해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정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의 생생지락을 이루기 위해 **與民同樂(여민동락: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다)**을 행하였습니다. 하늘이 맡겨준 존재인 백성들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국민, with the people** 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제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알고 안타까워함은 세종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이건 나라이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아니면서,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웅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느날 떨어지는 대박이 아니라, 매일 안심하고 즐겁게 조금씩 발전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내 곁의 사람을 보며 함께 나아가는 즐거운 10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현모 「세종이라면」



ABOUT WRITERS

COVER STORY -

- 관세 법령 변경 - 관세청의 과세자료 확보방안과 기업의 법규준수 제고



유 입 세 관세사
 (isv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1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FTA News-

-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이슈



홍 동 엽 대리
 (dyho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1팀
- 前 서울본사 통관 1팀
- AEO 컨설팅 경력다수

Voices From The Fields-

- 지역파견 FTA 전문 관세사가 느끼는 현장의 소리



서 지 민 관세사
 (jm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 본사 컨설팅본부 FTA 파견팀
- 광주 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센터
- FTA 컨설팅 전문 관세사

RULINGS ©

- 수입 전 합의된 할인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HQ 133044 2011.03.09)



김 혜 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관리사

Cover Story

관세청의 과세자료 확보방안과 기업의 범규준수 제고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따라 조세기관의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조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최근 관세청의 과세자료 확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제264조 내지 제264조의9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2014년 현재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청의 다양한 과제자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른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세자료 확보 강화 내역

(1) 여신전문금융회사 -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내역 등 제공

2014년 관세법 일부 개정으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264조의2)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 하였다.

이로써 관세청장은 여신금융으로 인한 해외 자금 거래 및 출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제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매 분기 기준 1만불 이상인 경우 관세청장에게 자동으로 통보 되었으나, 올해부터 5,000불 이상으로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2) 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공사 -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제공

지난해 고가로 허위 신고한 수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심장수술 재료,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수입상 11개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당한 이익은 관세청 추정 약 4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¹

이를 반영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²

동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 또한 수출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한국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악덕 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물건 값을 속이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때 무역보험공사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세

청은 제공 받은 보험금 지급현황을 통해 실제 물건 값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 제도 강화에 따른 시사점

앞으로 해외 대금결제를 위하여 여신금융을 이용한 수출입업체의 경우 관세청에 그 물품에 대한 결제금액이 제공되기 때문에 상업송장 작성 시 가격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해외여행객의 경우에도 매 분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5000불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입국 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실한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장애인·노인용 보조기구 등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거나 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가격을 속이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적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의 경우 2014년 관세법에 신설된 '가격조작죄'(제270조의 2)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관련 수출입 기업은 앞으로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를 근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채널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기업들도 어느 때 보다도 투명하게 신고를 하는 등 법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¹ 보도자료 - '치료재료 기획조사', 관세청, 2013.11.21

²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4.08.06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이슈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4년 9월 23일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총생산 GDP 세계 11위 수준의 캐나다와 12번째 자유무역 파트너를 갖게 되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한-캐나다 FTA 협상 단계에서 민감품목인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사한 쟁점으로 정체 상태에 있던 호주와의 FTA가 타결되면서 한-캐나다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번 서명으로 양국관계도 특별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24년 만에 격상되었다. 정치와 경제·군사·문화 등 협력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개념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간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한-캐나다 FTA 조기 발효목표로 10월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가전 등 일부 제조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천연자원은 주요 수입품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안정적인 자원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이슈 사항에 보다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자동차 산업

對캐나다 수출물품 중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하면 49.6%로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 對캐나다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2013년 기준, 단위: US\$)

주요수출품(KR→CA)	수출액	주요수입품(CA→KR)	수입액
자동차	22억 2,700만	유연탄	15억 8,700만
무선전화기	6억 6,200만	펄프	2억 9,100만
자동차부품	2억 3,600만	알루미늄	2억 1,700만
섬유기계	1억 1,900만	동광	1억 8,400만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TI 4자리 기준)

지난해 캐나다 자동차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44.5%, 일본산은 3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은 21 만 여대로 점유율은 12.1%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과 3년내 관세철폐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FTA의 조기발효를 통해 선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동반 성장하여 경제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축산업

캐나다산 쇠고기는 현행 관세율이 40%이지만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돼지고기도 22~25%인 관세가 각각 5년, 13년에 걸쳐 철폐되므로 국내 축산 농가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인 농축산물은 한-EU, 한-미 FTA, 한-호주에서 이미 개방되었으며 추가개방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수입물품간 경쟁이 가열되어 가격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축산강국인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 증가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산업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입급증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조항과 저율관세 할당 같은 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 천연자원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천연자원은 상당부분 이미 무관세 품목이고 오히려 안정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수출확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

로 보인다.

□ 한-캐나다 FTA 발효에 대한 전망

지리적 특성상 미국, 멕시코와 인접한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체결로 인해 교역이 북미지역에 편중돼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으나 이번 FTA를 통해 한국도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 멕시코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대가 기대되므로 일본, 중국 등 주요경쟁국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려면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 앞서 FTA를 체결하게 되는 만큼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면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FTA 발효자체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적극적인 수출확대의 기회이자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경제에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대리 홍 동 업

(dyhong@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지역파견 FTA 전문 관세사가 느끼는 현장의 소리

파견업무의 시작

올해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역 파견 전문가를 35 명으로 크게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FTA 업무를 시작하게 된 신설 FTA 활용 센터가 생겨나게 되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FTA 활용지원 센터도 그 중 하나였다. 파견 초기에는 “광주광역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FTA 활용 유관기관과 업체 담당자의 만남을 가졌고, 수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계시는 “통상닥터”분들을 소개 받았다.

광주·전남지역의 FTA 컨설팅 현장 에피소드

기존 광주·전남지역의 FTA 활용센터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업체 담당자들은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FTA 활용센터가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출입 업체의 FTA 컨설팅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문조사(전화 설문 병행)와 공문 송부를 통해 신설 사업에 대해 홍보하였다. 그리고 내방을 하셔서 수출입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드리고, 덧붙여 FTA 컨설팅 사업에 대해 홍보하였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HS code 문의와 원산지 증명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게 되었다.

8 월에는 지역 파견 관세사들에게 현재까지 컨설팅한 업체 중, FTA 활용에 있어 다른 기업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보고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따라서 약 6 개월간 컨설팅한 업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후, 담당자에게 동의를 얻어 선도기업으로 보고하였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한 업체에 대해 소개하자면 국내 납품업체로서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여 초기에는 FTA 활용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국내 납품업체의 상위업체가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다른 납품 업체 역시 FTA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FTA 활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작 초기에는 FTA 활용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는 HS code 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상위업체에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공급받는 상위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납품업체에게 물품을 수주하여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담당자는 원산지관리사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여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 FTA 활용 등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니 FTA 활용 지역 컨설턴트로서 뿌듯했다.

지역 수출기업 FTA 활용 애로사항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FTA 를 활용하는 기업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지만, 무역업무에 있어 FTA 부문은 일부분에 국한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FTA 미활용 업체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관세 혜택을 받을 뿐, 직접적으로 혜택을 향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역 파견 컨설턴트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출업체가 FTA 활용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서 FTA 활용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지 민
jmseo@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세관 등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에 동참
- 환경 변화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특례 확대 및 조정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의 AEO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공인기준 완화

- 중소기업은 2년 평균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 공인신청후 연속 2분기 동안 80점 이상이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제4조 제②항)
- * 세관 규제개혁 과제 일부 수용('14.4월)

- 중소기업은 법규준수도가 60점 이상이면 공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제6조 제④항, 제12조의2)
- * 세관 규제개혁 과제 수용('14.4월), (현행)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은 공인신청 각하 또는 기각

- 9개 모든 당사자의 공인기준 재무 건전성 기업규모의 건수기준을 삭제(별표1)

-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건의 사항 수용('14.6월)

(2) AEO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

-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을 등급에 관계없이 5년으로 통

일(제13조 제④항)

- * 세관 규제개혁 과제 수용('14.4월), (현행) A, AA등급(4년), AAA등급(5년)

(3) 통관절차 등의 특례 확대 및 조정 (제15조 제①항 별표2)

- 특례의 확대
 - (수출업체)「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 심사 면제
 - (수입업체)「수입통관 사무처리 운영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 심사 확대(AA·AAA등급 → 모든 등급)
 -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세관장 정기 업무점검 생략

- 특례의 조정
- (공통)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조정
- * (AA·AAA등급 대표자 → AAA등급 대표자)
-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CIP라운지 운영 제도 변경에 따른 특례 대상 조정
- (수입업체) 월납고시 개정에 따른 월별 납부 혜택 조항 삭제*

* 월납고시 개정(제2013-25호, '13.5.6)에 따라 월납 제외대상(신고수리전 반출물품,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등 과세보류 대상물품 등)이 폐지되어 모든 물품에 대한 월납이 가능해졌으므로 동 혜택 조항 유지 불필요

3. 시행일자 : 2014년 9월 15일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AEO 고시 개정에 따른 개정 사유 반영 및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
- 종합심사시 AEO기업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절차 마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절차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심사 간소화 관련 심사 주체 명확화 (제18조)

- 현행 심사 주체를 관세청장에서 세관장 등으로 수정

(2) 물류업체·관세사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절차 생략 (제24조)

- 물류업체·관세사 등은 사전 정보분석 절차가 필요치 않아 절차 생략
- 심사팀장의 정보분석 보고에 대한 세관장의 보강 지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

(3) 현장심사 통지서에 대한 수령 관련 절차 명확화 (제27조)

- 현장심사 통지서의 수령증을 영수 및 보관토록 개정

(4)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송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절차 신설(제27조)

- 수출입 AEO기업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야 포함 심사시 AEO기업이 외국환거래를 자율점검하도록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송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청 심사정책과-2077('13.7.26)」에 따라 AEO기업에게는 종합(현장)심사 시작일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절차 규정

(5)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을 임의규정화 (제36조)

- 제23조에서 물류업체, 관세사 등의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내용 일치

(6) 보완요구 절차 준용 규정 변경 (제39조)

- AEO 고시 개정에 따라 보완 절차를 법규준수개선계획(CIP) 절차를 준용하도록 변경

3. 시행일자 : 2014년 9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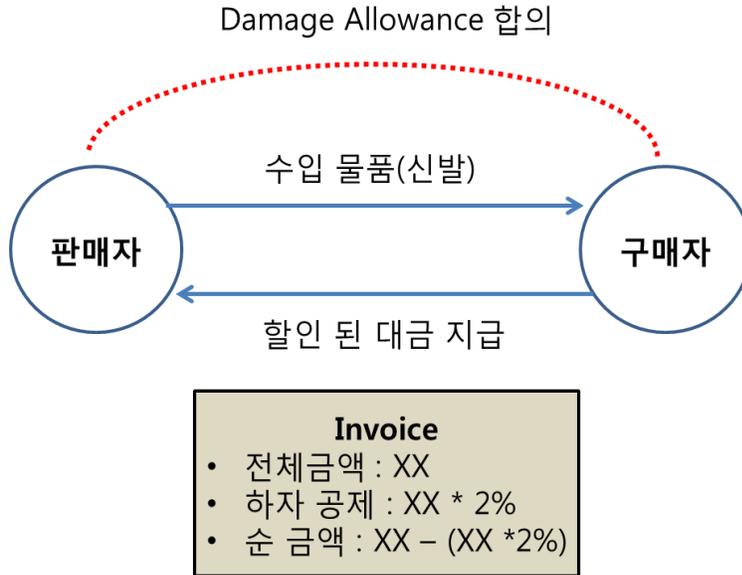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⑥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수입 전 합의된 할인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HQ 133044 2011.03.09)



□ 거래사실(Facts)

- 미국 구매자 A 는 신발을 대만과 홍콩의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된 제 3 자로부터 구매함
- A 와 각각의 판매자들은 선적전에 판매가격의 2%를 할인하는 "하자로 인한 공제(Damage allowance)"에 합의함
- 신용장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해당 신용장에 2% 할인 적용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송장 상에도 할인 내용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A 는 물품의 대금으로 할인이 적용된 금액만을 지급함
- 하자 공제란 수입 후에 하자 또는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대신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함

□ 쟁점(Issue)

수입 전에 합의되어 판매자가 조건없이 구매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그 할인의 내용이 상업송장에 반영된 경우, 할인 적용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1 방법의 적용

가. 관세평가는 우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 판매될 때 실제지급가격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정해지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나. 실제지급가격은 금액의 도출방법과 상관없이 고려되며, 할인 또는 협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산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음 (참조. 19 CFR § 152.103(a)(1)), 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수입 이전에 할인액이 합의된다면 해당 할인된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함 (참조. HRL 54701 9 '00.03.31, HRL 545659 '95.10.25)

2. 할인의 인정 기준

미국 관세청은 할인 또는 조정가격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참조. HRL W56346 2 '06.10.11)

(1) 할인 또는 조정가격은 물품의 수입이전에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해당 할인에 대한 합의가 수입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세청에 서류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할인 또는 조정금액이 무(無)조건적이어야 하며, 만약 조건적인 경우 모든 조건들은 수입 이전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

3. 사례에 대한 적용

가. 합의 시점

A 와 판매자 간의 문서화된 계약은 없지만, 선적 이전 A 가 발행한 신용장에서 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에도 할인 금액이 반영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도 할인을 반영하고 있어 할인의 내용 및 수입 이전에 합의 되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나. 조건 유무

해당 할인은 실제 하자나 결함과 관련 없이 수입 시점 또는 이후에 손상 물품에 대한 환불 요청을 대신하는 상업적인 협상으로 제공된 할인이고, 이와 관련하여 A 에게 구체화된 구매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 **결정(Holding)**

해당 사례의 경우 할인은 수입 이전에 합의되고 구매자에게 무(無)조건적으로 제공되어 상기 기준에 부합하므로, 할인이 적용된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